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1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맹성규·이건태·이재정

강유정 • 복기왕 • 박홍배

김태선 · 황정아 · 박지혜

박희승 · 임오경 · 강준현

이소영 · 김윤덕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나머지 자동차 소유자(재산 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동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1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다만,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시·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을 접수한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폐차 요청으로 폐차가 완료

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	제13조(말소등록) ①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	<u>-</u>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
	의 사유로 나머지 자동차 소
	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동소유자"라 한다)의 동의
	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이 있어 제1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다만, 차령 등

② ~ ① (생 략) <신 설>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 ① (현행과 같음)
- ① 시·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말 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
 등록의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제9 호에 따른 폐차 요청으로 폐차 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한 공 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 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